

의안번호	2217125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0.
추 계 번호	26A1091

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정보통신망 구축, 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 및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3.8억원, 2030년 7.9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4.3억원(연평균 8.9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정보통신망 구축(안 제42 및 부칙 제1조)	—	11.1	—	1.1	1.1	13.3	3.3
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(안 제46조)	0.4	—	—	—	—	0.4	—
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47조)	3.4	6.8	6.8	6.8	6.8	30.6	6.1
합계	3.8	17.9	6.8	7.9	7.9	44.3	8.9

주: 1.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

2.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 (가산금)	○ 국세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국세외수입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때 1 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- 가산금은 금융회사 등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0% 범위에서 정하는 가산금 -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이내 - 국세외수입관계법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부과기준 적용	의무규정
2	안 제9조 (국세외수입 환급금의 충당)	○ 세무서장은 국세외수입 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, 해당 환급금(이자 포함)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2조 (제2차 납부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)	○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국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금액·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납부고지서 발급 - 제2차 납부의무자: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, 사업의 양수인, 신탁재산의 수탁자	의무규정
4	안 제15조 (실패확인)	○ 국세청장은 실패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(실패확인원)을 채용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22조 (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)	○ 관할 세무서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실패조사의 결과 해당 체납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3조 (독촉)	○ 중앙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24조 (체납처분)	○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수입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을 함	의무규정
	안 제25조 (압류의 요건)	○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	의무규정
	안 제33조 (압류해제의 통지 등)	○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,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37조 (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)	○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외수입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의 처분이나 사해신탁 등의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38조 (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)	○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(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, 재산조사 등)를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0	안 제42조 및 부칙 제1조 (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)	○ 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○ 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 구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	의무규정
	안 제43조 (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 합 구축)	○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한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외수입정보통신 망을 국세 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45조 (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)	○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, 등기 또는 등록에 관 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함	의무규정
12	안 제46조 (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재정경제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국세외수입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수 납정보시스템의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13	안 제47조 (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)	○ 국세외수입의 체납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체납정 보 공개, 감치,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 에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14	안 제 48조 (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)	○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특별한 공 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15	안 제50조 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	○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업무상 취득 한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 (가산금)	×	○ 미대상(재정수입의 증가)
2	안 제9조 (국세외수입 환급금의 충당)	×	○ 미대상(재정수입의 증가)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3	안 제12조 (제2차 납부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)	×	○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4	안 제15조 (실태확인)	×	○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5	안 제22조 (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)	×	○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6	안 제23조 (독촉)	×	○ 현행 중앙부처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없이 수행 가능 － 현행 중앙부처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미납시 독촉 등을 수행하고 있음
7	안 제24조 (채납처분)	×	○ 현재 중앙부처의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없이 수행 가능 － 개별 법률 규정에서 채납 시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* 예시: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20조(강제 징수 등)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 (가산금 및 채납처분 등)
	안 제25조 (압류의 요건)	×	
	안 제33조 (압류해제의 통지 등)	×	
8	안 제37조 (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)	×	○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9	안 제38조 (채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)	×	○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0	안 제42조 및 부칙 제1조 (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 통신망 구축)	○	
	안 제43조 (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)		
11	안 제45조 (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)	×	○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2	안 제46조 (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
13	안 제47조 (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)	○	
14	안 제 48조 (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)	×	○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5	안 제50조 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	×	○ 미대상(재정수입의 증가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중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정보통신망 구축 비용은 유사 사업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며, 유지비용은 구축 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는 조달청 공고 제안요청서상의 사업금액 기준으로 하며, 구축 비용은 2027년 단년도 발생으로 가정
 - － 정보통신망 구축 시 국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국세 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가정
 - 유지비용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한 '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'¹⁾에 따라 산정
 - － 동 가이드에서 제시한 유지관리비 효율 범위(10~15%) 중 최소 기준인 10%를 적용하여 총구축비의 10%로 산정
- 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에 대한 재정소요액은 기존 유사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된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으로 가정
 - 동 법안에서는 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주기(매년 또는 일정 연도 주기 등)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시행 첫해에 한하여 1회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 등의 비용으로 가정
 - (위원회 설치)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설치는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에 모두 설치된다고 가정
 - 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'국세심사위원회'의 위원 구성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²⁾

1)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는 공공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'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'를 제정·고시하여 공공기관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

2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53조에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31명 이내(공무원 6명, 민간위원 25명 이내), 세무서 24명 이내(공무원 4명, 민간위원 20명 이내)로 위원 후보군(인력 풀)의 상

- 회의 참여 인원 기준³⁾: 지방국세청 9명(위원장+내부위원 3명+민간위원 5명), 세무서 7명(위원장+내부위원 2명, 민간위원 4명)
 - (횟수)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
 - 다만, 2026년은 부칙안 및 법안심의 등을 감안하여 2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
 - (단가)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⁴⁾ 등을 고려하여 회당 30만원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- 다만, 2026년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비는 1/2(6개월분)만 반영
 - 그리고 안 제42조(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)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 단서 조항을 감안하여, 추계기간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정보통신망 구축(안 제42조 및 부칙 제1조)

-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1.1억원으로 추계됨
-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는 조달청 공고 제안요청서 기준으로 유사 사업의 평균 사업비를 적용하였으며, 유사 사업 3건의 평균은 11.1억원
 -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성격상 추계기간 중 2027년 1개년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한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, 실제 회의 참여 인원은 「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」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

3) 「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(국세청 훈령 제2725호)」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

4)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일당 20만원내(서면심사 15만원), 참석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한하여 10만원 추가, 사전 자료수집·현지조사·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pp. 150~151)

[표 2] 개정안과 유사한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(예산)비 현황: 조달청 공고기준
(단위: 억원)

사업명	발주처 (제안일자)	수행기간	금액
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통합·구축사업	한국지역정보개발원 (2025.6)	계약 후부터 335일 이내	8.8
정보보안통합포털 구축 사업	한국주택금융공사 (2025.10.)	계약일부터 10개월	9.7
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(K-NASS 3차)구축사업	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(2026.2.)	계약후 300일	14.8
평균			11.1

자료: 조달청 조달데이터허브(기관별 제안요청서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정보통신망 유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2년
간 총 2.2억원으로 추계됨

-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무상 하
자보수 기간(1년)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⁵⁾
- 유지비용은 구축비용의 10%를 적용하여 연간 1.1억원으로 산정

[표 3] 정보통신망 유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0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정보통신망 유지비용	-	-	1.1	1.1	2.2	-

□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0년
까지 4년간 총 13.3억원(연평균 3.3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0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비	11.1	-	1.1	1.1	13.3	3.3

5) 기획재정부의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 S/W의 도입 후 1년
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하도록 함

나. 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(안 제46조)

- 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‘국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’을 수립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,100만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- 제정안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행된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5] 제정안과 유사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구제목	관리기관	수행시기	금액
사이버지식정보망 운영 개선방안 연구	국방부	2025	29
과학기술분야 연구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운영·관리 제도화 방안	과학기술정보통신부	2024	60
국방데이터 품질점검 실증 및 운영방안 연구	국방부	2024	42
국가 자원안보 시스템 구축 운영방안 연구	산업통상자원부	2023	30
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운영방안	과학기술정보통신부	2019	45
평 균			41

자료: 온-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6] 제정안의 기본계획 수립 시 추가 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기본계획 수립 비용	41	-	-	-	-	41

다.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(안 제47조)

□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 단가 등 산정

- (구성) 위원회 구성은 ‘국세심사위원회’ 동일하게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－ 동 법안에 따른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법률·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
 - － 국세심사위원회: 지방국세청 9명(위원장+내부위원 3명+민간위원 5명), 세무서 7명(위원장+내부위원 2명, 민간위원 4명)

- (횟수) 회의 개최 횟수는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연간 4회로 가정하여 추계
 - 다만, 부칙안 및 법안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은 2회로 가정
 - (단가)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비는 회의수당은 기획예산처 예산집행 지침을 감안하여 회당 3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
-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.4억원, 2030년 6.8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0.6억원(연평균 6.1억원)으로 추계됨
-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경우, 회의당 민간 위원 5명 참석 및 1인당 회의비 30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전국 133개 세무서에 설치되는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의 경우, 회의당 민간 위원 4명 참석 및 1인당 회의비 30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7] 국세외수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지방국세청 (회의수당×인원×횟수×7)	0.2	0.4	0.4	0.4	0.4	1.9	0.4
세무서 (회의수당×인원×횟수×133)	3.2	6.4	6.4	6.4	6.4	28.7	5.7
합 계	3.4	6.8	6.8	6.8	6.8	30.6	6.1

주: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